

『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양진오 의원 외 14명

2. 제안이유

-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포획 포상 기준에 멧돼지를 추가하여 시민의 생명보호와 농업인의 안정적인 경작 활동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 대상 추가(안 제9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4조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불임)
-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19. 8. 30. ~ 9. 6.) 결과 의견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「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

-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포획 포상 기준에 멧돼지를 추가하여 시민의 생명보호와 농업인의 안정적인 경작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멧돼지 포획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농작물 피해 최소화는 물론 멧돼지 개체수 조절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경상북도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운영지침(2019.1.)의 포상금 지급 기준 및 단가에 따라 멧돼지 한 마리당 5만 원의 포상금을 책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.